

#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1 - 10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## 1. 요구이유

- 거창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(2021.12.31.)됨에 따라
-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단체를 공개모집 하여 마을센터와 지역의 역량을 함께 키우는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

사무명	주요내용
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	- 거창군 단계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-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- 마을만들기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 - 마을만들기 관련 지역 현안해결과 사후관리 - 지역개발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
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	- 사업비 : 350백만원 정도 / 매년 농식품부 공모 - 주요내용 : 마을만들기 주민교육과 경험습득 지원, 신규공모-사업추진-사후관리 활성화 지원, 우수사례 발굴·육성 및 확산 등

### 나.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(안)
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 (3년간)
- 위 치 :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내(신활력공유센터 준공 후 이전)
- 구 성 원 : 센터장 1명(상근 또는 반상근), 사무국장 1명, 사무원 2명  
 ※ 구성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며,  
 센터역량강화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채용승계

다. 연간 소요예산(안)

구분	군비	시군역량강화 (국70%, 도9%, 군 21%)
합계	<b>87,000천원</b>	<b>350,000천원</b>
인건비	<b>67,200천원</b> - 사무원 2,100천원*2명*12개월 - 초과 및 출장 300천원*2명*12개월 - 4대보험 등 800천원*12개월	<b>78,000천원</b> - 센터장 2,500천원*12개월 - 사무원(팀장) 2,300천원*12개월 - 초과 및 출장 350천원*2명*12개월 - 4대보험 등 1,000천원/월
운영비	<b>19,800천원</b> - 사무집기 임대·구입 - 사무용품 구입 - 전기·통신 요금 등	
사업비		<b>272,000천원</b> -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- 마을활동가 발굴·육성 -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

※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범위 내에서 상근직 2명 인건비 지급 가능(센터장 반상근 적용시 군비로 임금지급 / 사무원 2명 국도비 지급)

3. 관계법령
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8조, 제20조

**제18조(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)**

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20조(위탁 운영)**

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(조전부개정 2020.12.30.)

## [붙임] 관계법령

###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# 제 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### ①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조례

#### 제18조(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)

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(위탁 운영)

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(조전부개정 2020.12.30.)